

韓國圖書館賞 表彰規程

第1條 (目的) 本規程은 韓國 圖書館事業 發展에 功績이 顯著한 個人 또는 團體를 表彰하여 그 功勞를 讚揚하고 아울러 今後의 圖書館事業 發展에 대한 意慾을 鼓吹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表彰의 種類) 表彰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功績賞
2. 研究賞
3. 勤績賞

第3條 (功績賞) 功績賞은 韓國 圖書館事業 發展에 顯著한 功績이 있는 個人 또는 團體에게 授與한다.

第4條 (研究賞) 研究賞은 圖書館發展에 寄與하는 研究業績이 있는 個人 또는 團體에게 授與한다.

第5條 (勤績賞) 勤績賞은 20年以上 圖書館事業에 從事하여 圖書館 發展에 寄與한 個人에게 授與한다.

第6條 (受賞者의 選定)

1. 各地區協議會長, 各部會長 및 專門委員會 委員長은 每年 10月末까지 다음 書類를 具備하여 會長에게 推薦한다.

履歷書	1通
經歷證明書	1通
推薦書	1通
功績調查書	1通

第7條 (表彰審査委員會)

1. 本規程에 의한 施賞業務를 公正히 遂行하기 위하여 表彰審査委員會를 둔다.

2. 表彰審査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委員長 1人

委員 10人 以內

3. 委員長은 專務理事가 되고 副委員長은 專門委員會 委員長이 된다.

4. 委員은 專門委員會 委員長, 事務局長, 各部會와 圖書館學界 및 理事中 各 1人 以上을 委員長이 推薦하여 會長이 委囑한다.

5. 表彰審査委員會는 功績調查書를 作成하여 審査結果를 理事會에 報告한다.

第8條 (施賞方法과 副賞)

1. 賞狀과 賞金 또는 賞品을 授與한다.

2. 賞金 또는 賞品은 豫算 範圍內에서 따로 定한다.

第9條 (表彰의 時期) 表彰은 總會에서 行함을 原則으로 하며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隨時 이를 行할 수 있다.

第10條 本規程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事務局 內規로서 따로 定한다.

附 則

1. 本規程은 1968年 6月 21일부터 施行한다.

2. 本規程은 1974年 12月 14日 改定 施行한다.

事務室 移轉 案内

本協會는 1955年 創立 당시부터 舊 國立中央圖書館 建物(서울 中區 小公洞 6)의 一部를 事務室로 使用해 왔습니다.

이번에 國立中央圖書館이 前 南山 어린이 會館으로 移轉하게 됨에 따라 本協會는 다시 國立中央圖書館의 各별한 배려로써 아래와 같이 事務室을 移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간 본 협회는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協助과 後援에 힘입어 많은 發展을 하였습니다. 이제껏 본 협회를 아껴주신 여러분들께 거듭 感謝를 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指導鞭撻있으시기를 바랍니다.

住 所: 서울特別市 中區 會賢洞 1街 100의 177번지(國立中央圖書館內)

전화번호: (22) 4864 · (22) 5613 우편번호: 100

진체구좌번호: 537530번

社團 法人 韓國 圖書館協會